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 최혁진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673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안 제5조의5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 박성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9.

다.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5조의5 제1항 신설)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5조의5 제2항 신설)

최근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이러한 가치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평등,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확산·장려하려는 것임.

국가는 공적 가치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업무에 있어서 공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가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소비자 보호, 근로조건 개선, 인권 및 환경 보호 등 공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현재도 시행령 등을 통해 국가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확대 허용하고 있으며²⁾,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³⁾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임.

한편, 현재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01144호,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해당 제정안이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경쟁성과 투명성 보장이 핵심이므로, 법에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노력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를 넘어서며,

‘사회적 가치’ 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안 제5조의5 제2항에 따른 계약 참여 촉진 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개정안이 기술력 중심의 경쟁입찰 원칙을 약화시키고,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중소·신생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5(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160